



## 법규관련

# 택시용 LPG특소세 면제 발의안 검토보고 (박계동 의원 대표발의)

재경위 전문위원

택시용 LPG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박계동 의원 발의안에 대해 재경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게재한다.

### I. 제안경위

1. 발의자 : 박계동의원 등 2인(찬성자 69인)
2. 발의일 : 2004. 8. 31
3. 회부일 : 2004. 9. 3

석유가스중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연료비 경감을 통하여 택시 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III. 주요내용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안 제111조제5호 신설).

### II. 제안이유

경기침체의 여파로 택시업계에 불황이 날로 심화되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만으로는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여객운송용 택시에 공급하는

### IV. 검토의견

이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은 택시에 공급하는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 kg당 382원 부과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
개정안	■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에 제3호 신설)

□ 이 개정안은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Kg당 40원이던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연차적으로 인상되어 2006년 7월 이후에는 Kg당 704원이 됨에 따라<sup>1)</sup> LPG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업계의 원가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하철 및 마을버스의 확충, 렌트카 등의 성업으로 택시업계는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바, 택시에 공급하는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자료 1: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 내역 참조>

□ 2000년 12월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은 과거 산업지원, 국민생활안정 등의 이유로 에너지 저가정책을 유지한 결과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유류간 상대가격비의 지나친 격차로 인하여 에너지수급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 상대가격비율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가였던 경유와 LPG 가격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 유류간 상대가격비율

구 分	OECD평균	한 국	
		세제개편 전	2006.7 이후
휘발유	100	100	100
경유	80	47	75
LPG(부탄)	51	26	60

- 1) 2000년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2006년 7월 이후 kg당 704원이고, 2004년 9월에는 Kg당 420원이나, 2004년말까지 탄력세율이 적용되므로 현재 Kg당 382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2) 유가보조금은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에 대하여 2005년 6월말까지 2001년·2002년 인상분의 50%와 2003년·2004년 인상분의 100%를 지급하고 있음.  
 3) 택시용 LPG 부탄만 면세할 경우 연간 3,000억원의 세수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사용유류에 대하여 면세할 경우 연간 총 2.2조원의 세수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택시에 공급하는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첫째, 경유·LPG(부탄)에 대한 급격한 세율인상은 이를 연료로 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 운수업계의 원가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 업계에 대하여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음.<sup>2)</sup>

<참고자료 2: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참조>

□ 둘째, 택시에 공급하는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다른 운송업계인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면세요구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세제상 운송용 유류에 대한 영구적인 면세는 막대한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sup>3)</sup> 이에 대한 재원보전대책이 필요할 것임. 또한, 현재 농·어업용으로 공급하는 면세유류에 있어서 부정유류 유통 등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바,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하여도 면제하는 경우 유류 유통과정상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셋째, 그동안 유류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외에 지난 2003년 정기국회에서 법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50% 경감제도를 2006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였고, 택시의 의무적인 대·폐차<sup>4)</sup>에 따른 등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택시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sup>5)</sup>

□ 네째, 2005년 경유승용차의 시판허용에 따른 경유소비 급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의한 유류 간 상대가격비율 휘발유:경유:LPG=100:75:60을 100:85:50으로 재조정하여 경유의 상대가격비율은 인상하는 대신 LPG의 상대가격비율은 인하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을 2006년 7월 이전에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므로<sup>6)</sup>,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LPG의 상대적인 가격이 인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1.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 내역

(단위: 원/ℓ)

	휘발유	경유	LPG부탄(원/kg)	등유	중유	LPG프로판(원/kg)	LNG(원/kg)
2000.7(세제개편전)	630	155	23(40)	60	-	40	40
2001.7	630 588	185	67(114)	82	3	-	-
2002.1	630 588	191	67(114)	82	3	-	-
2002.7	630 586	234 232	132(226 203)	107	6	-	-
2003.7	630 572	276 261	189(323 297)	131	9	-	-
2004.3	630 559	276 255	189(323 297)	131	9	-	-
2004.7	630 545	319 287	245(420 382)	154	11	-	-
2005.7	-	362	301(515)	178	15	-	-
2006.1		362	346(592)	205	17	-	-
2006.7		404	411(704)	231	20	-	-

\*우사체는 탄력세율(실제 부과세율)

\*LPG부탄의 ( )는 kg당 세율로서 기본세율임.

#### 2.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구분	보조금 지급기준(원/l)		대당 연간 보조금(천원)
	04.1~04.6	04.7~04.12	
버스	110.26	168.12	5,392
택시	129.24	194.78	1,840
화물차	100.24	152.84	1,780
연안화물선	100.24	152.84	6,910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 :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버스는 9년, 개인택시는 7년, 일반택시는 4년간 운행한 후 대·폐차하도록 하고 있음.

5)2003. 12월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택시의 취득·등록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이완구·정동영·원철희의원 외 127인 소개)이 제출되어 심사하였으나, 택시의 등록세만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음.

6)재정경제부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방안에 대하여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한국조세연구원은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2004. 9. 14일 개최하였음.